

의안번호	2220371
의 퇴 인	김미애 의원
회 답 일	2026. 8. 6.
추계번호	26F387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7년 97.3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292.0억원(연평균 97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연장 (안 제29조 제1·2·3항)	97.3	97.3	97.3	292.0	97.3
－ 취득세	90.2	90.2	90.2	270.7	90.2
－ 등록면허세	0.01	0.01	0.01	0.04	0.01
－ 지역자원시설세	0.4	0.4	0.4	1.2	0.4
－ 주민세	0.4	0.4	0.4	1.2	0.4
－ 재산세	6.3	6.3	6.3	18.9	6.3

주: 1) 단수조정으로 인해 연도별 금액의 합계와 누적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연도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도 제시된 평균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2)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재산세의 경우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변동 발생 가능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9조 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)	○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, 국가유공자 등 지원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제,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대한 지방세 면제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9조 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, 국가유공자 등 지원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제, 국가유공자 자활(自活)용사촌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 - 지방세 세목별 최근 5년 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

- (제1항) 국가유공자 등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
 -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금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부금

-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전자금, 사업자금 및 주택자금 등에 대한 나라사랑대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주택구입 및 아파트분양에 대해서는 직접 및 위탁대부 시행
- 주택구입 및 아파트분양 대부는 무주택자에 한정하여 3,000~6,000만원 한도액으로, 연이율 2.5%로 20년 원리금균등상환조건으로 대부
- * 주택구입(아파트분양) 대부가능금액은 지역유형¹⁾ 외에도 LTV, 선순위채권, 소액임차보증금 등의 영향을 받음

○ 적용기한 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

□ (제2항)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

○ 대상 단체

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,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,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, 광복회, 4·19민주혁명회, 4·19혁명희생자유족회, 4·19혁명공로자회,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회, 5·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·18민주화운동공로자회

○ 면제대상 세목: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,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(소방분), 고유업무용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, 주민세(사업소분, 종업원분)

○ 적용기한 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

□ (제3항)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

○ 면제대상지역: 전·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(척추장애자 및 실명용사 등)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전·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 마을단위(동·리)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중 국가보훈처장이 지정

1) 주택구입 및 아파트분양 대부한도(백만원): 특별·광역시 60, 시 지역 40, 군 지역 30.
국가보훈부, 「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: 대부지원」

하는 경우²⁾)

- 면제대상 세목: 취득세,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(소방분)
- 적용기한 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

(2) 추계방법

□ (추계방법)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, 국가유공자 등 지원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제,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
- 각 항의 세목별 면제실적은 최근 5년간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안정된 추세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, 향후 면제실적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면제실적을 기준으로 추계

[표 2]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실적 추이: 2020~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	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(‘20~’24)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(제29조제1항)	합계	7,038.4	9,554.6	5,912.7	8,931.6	12,947.9	8,877.0
	- 취득세	7,038.4	9,554.6	5,912.7	8,931.6	12,947.9	8,877.0
국가유공자 등 지원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제(제29조제2항)	합계	875.2	465.3	525.4	439.1	438.3	548.6
	- 취득세	410.9	0.1	32.9	0.4	5.6	90.0
	- 등록면허세	1.0	1.3	1.3	1.3	1.3	1.3
	- 지역자원시설세	35.1	33.6	34.5	30.2	27.5	32.2
	- 주민세	46.3	48.0	43.0	28.1	30.2	39.1
	- 재산세	381.8	382.2	413.7	379.1	373.7	386.1
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대한 지방세 면제(제29조제3항)	합계	276.5	313.7	291.7	437.8	215.9	307.1
	- 취득세	15.7	38.3	22.1	202.0	0.0	55.6
	- 지역자원시설세	10.3	9.7	9.2	7.2	6.5	8.6
	- 재산세	250.5	265.6	260.3	228.5	209.4	242.9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의4.

(3) 추계결과

-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7년 97.3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292.0억원(연평균 97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연장 (안 제29조 제1·2·3항)	97.3	97.3	97.3	292.0	97.3
- 취득세	90.2	90.2	90.2	270.7	90.2
- 등록면허세	0.01	0.01	0.01	0.04	0.01
- 지역자원시설세	0.4	0.4	0.4	1.2	0.4
- 주민세	0.4	0.4	0.4	1.2	0.4
- 재산세	6.3	6.3	6.3	18.9	6.3

주: 1) 단수조정으로 인해 연도별 금액의 합계와 누적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연도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도 제시된 평균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2)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재산세의 경우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변동 발생 가능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